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3
----------	-----

제출년월일 : 2000. 5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99. 8.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결산서 작성시점을 조정하고 동 조례운영상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안제12조)
- 기금운용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로 조정(안제12조)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3개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4263)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이 평 자
	가정복지담당	신 규 옥
	담 당 자	유 연 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의 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 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